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h1>공 보</h1> <p>http://www.daedeok.go.kr</p>

제2022-37호
2022. 5. 31.(화)

차 례

공 고(2)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공고(공고 제2022-582호) …… 1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2-583호) …………… 4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582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내용: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2. 5. 31. ~ 2022. 7. 31.(2개월)
3. 기타사항
 - 가.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나.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전화: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보과(☎ 042-608-5312)

-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공 고 문

공 고 제 호

확인서 발급 신청인	성명(법인명) 박 천 보	생년월일(등록번호) 1947.09.19.
	부동산의 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41-1(답, 504㎡)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41-3(답, 175㎡)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41-4(답, 656㎡)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41-5(답, 136㎡)	
	취득사유 단독증여(1980년 9월 20일) / 국유지 지분 제외	
	공고기간 2022년 5월 31일 ~ 2022년 7월 31일 (2개월)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①박용서, ②박경서, ③박기서, ④박찬동, ⑤박승숙(박승도, 박승수) ⑥박승완	생년월일(등록번호) ①1906.04.06. ②1910.07.25. ③1919.03.15. ④1930.12.14. ⑤1932.07.01. ⑥1946.01.01.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①박용서, ②박경서, ③박기서, ④박찬동, ⑤박승숙(박승도, 박승수) ⑥박승완	생년월일(등록번호)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유 의 사 항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의 신 청 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공고기간 만료일 부터 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위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가 확인서 발급 신청을 했다는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첨 소명서류와 같이 위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이 명백한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해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조회 되지 않아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대상

소재지	부동산의 표시			통지대상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신청인	취득사유	공고기간	사유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비고				
평촌동	41-1	답	504	박승도	대덕군	등기 명의인	박*보	증여	2022.05.31.~ 2022.07.31.	인적사항 조회불가
	41-4	답	656	박승수						
	22-2	전	838	박승주	신탄진읍					
	22-3	전	1,608	박승수	덕암리 8*					
	22	전	500	전순옥	대전광역시	박찬홍의 상속인				
	22-1		19		대덕구 석봉동 3					
	22-2		838							
22-3	1,608									
						**번지				

2. 공고기간: 2022. 5. 31. ~ 2022. 6. 14.(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나.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전화: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보과(☎ 042-608-5312)

붙임 1. 이의신청서 1부.

2.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1부.

이 의 신 청 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공고기간	만료일
					부터 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위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가 확인서 발급 신청을 했다는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첨 소명서류와 같이 위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이 명백한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박승도(등기명의인)		
	주소	대덕군 신탄진읍 덕암리 8*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41-1	답	500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박천보	생년월일(등록번호)	1947년 9월 19일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호수로 15**-**(갈전동)	취득연월일	1980년 9월 20일
	취득사유	단독증여	공고기간	2022. 05. 31. ~ 2021. 07. 31.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022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